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정 2004년 03월 01일
개정 2004년 11월 01일, 개정 2005년 12월 01일, 개정 2006년 12월 01일
개정 2007년 12월 01일, 개정 2008년 11월 01일, 개정 2010년 02월 01일
개정 2012년 11월 01일, 개정 2014년 09월 01일, 개정 2015년 03월 01일
개정 2015년 12월 01일, 개정 2016년 09월 01일, 개정 2022년 01월 01일

소관부서 : 대학원 교학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영산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대학원학칙 제45조에 의거 대학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09.01.)

제2조(적용) ①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세칙을 적용한다. (개정 2010.02.01)

② 이 세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0.02.01)

제3조 (삭제 2010.02.01)

제 2 장 입 학

제3조의2(입학전형) 입학전형은 매년 1회 또는 2회에 걸쳐 학기 시작 전에 실시한다. (신설 2010.02.01)

제4조(지원구비서류) ① 입학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01)

1.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 (개정 2010.02.01)
   가. 입학지원서(소정양식)
   나. 석사과정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다. 대학 · 대학원 전 학년 성적증명서
   라. 학업계획서
   마. 기타 필요한 서류
2. 일반·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개정 2010.02.01., 2015.03.01)
   가. 입학지원서(소정양식)
   나.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다. 대학 전 학년 성적증명서

라. 학업계획서

마.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삭제 2010.01.01)

③ (삭제 2010.01.01)

제5조(입학전형료) ① 입학지원자는 입학원서 제출 시 소정의 입학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학전형료는 면제할 수 있으며, 입학전형료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입학전형에 응시한 자가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01., 2014.09.01)

② 재입학을 하는 자는 제1항의 입학전형료 및 제4조에서 규정한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0.02.01.)

제6조 (삭제 2010.01.01)

제7조 (삭제 2010.01.01)

제8조(편입학) ① 각 학위과정의 편입학생 선발은 당해 학년도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 학과・전공계열에 편입학생을 선발할 수 있으며,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02.01)

② 각 학위과정의 편입학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개정 2010.02.01)

1. 박사학위과정 2학기에 편입하고자 하는 자는 국내·외 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하고 6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3학기에 편입하고자하는 자는 국내·외 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2학기 이상 이수하고 1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 1, 개정 2010.02.01)

2. 석사학위과정 2학기에 편입하고자 하는 자는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하고 6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3학기에 편입하고자 하는 자는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과정을 2학기 이상 이수하고 1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 1, 개정 2010.02.01)

③ 편입학 지원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2006.12.1, 개정 2010.02.01)

1. 박사학위과정 (개정 2010.02.01)

가. 입학지원서(소정 양식)

나. 석사과정 졸업증명서

다. 전적 대학원 박사과정 성적증명서

라. 기타 필요한 서류

2. 석사학위과정 (개정 2010.01.01)

가. 입학지원서(소정 양식)

나. 전적 대학원 석사과정 성적증명서

다. 기타 필요한 서류

④ 편입학전형은 하위 학위과정 성적에 대한 서류심사에 의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면접구술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 및 면접구술시험에 대한 전형방법은 제9조의2에 의한다. (신설 2006.12. 1, 개정 2010.02.01., 2014.09.01.)

⑤ 편입학한 자가 전적 대학원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학과(전공)책임교수 확인을 받아 편입학학점인정신청원[별지 제1호 서식]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본 대학교 내지 각 대학원과 학위교류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대학원에서 편입학할 경우 협정서 및 기타 증빙서류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6.12.1, 개정 2010.02.01. 2014.09.01.)

⑥ 편입학자는 본교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 2학기 이상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01)

⑦ 편입학자의 재학연한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6.12. 1)

제9조(학과(전공)지원) 각 대학원의 지원 학과(전공)분야는 동일계열로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2.01.)

제9조의2(전형방법및내용) 입학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구술시험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필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9.01.)

1. 서류심사의 경우 박사학위과정은 석사학위과정 성적을 심사하고, 석사학위과정은 학사학위과정 성적을 심사한다.

2. 면접구술시험 및 필기시험은 전공지식 및 연구능력을 심사한다. (신설 2010.02.01., 개정 2014.09.01.)

제9조의3(전형위원) ① 전형위원은 본 대학교 각 학과(전공) 소속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 학과(전공) 책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지명하며, 그 수는 2인 이상 5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14.09.01.)

② 전형위원은 서류심사와 면접구술시험, 필기시험을 행한다.(신설 2010.02.01., 개정 2014.09.01.)

제9조의4(배점및합격기준) ① 입학전형의 배점은 서류심사 100점(전적 대학 또는 대학원의 총 취득 성적을 100점으로 환산), 면접구술시험 100점을 각 50%(50점)씩 반영하고, 합격기준은 서류심사 60점(반영점수 30점), 면접구술시험 60점(반영점수 30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4.09.01.)

② 필기시험의 배점 및 합격기준은 필요시 따로 정한다.(신설 2010.02.01., 개정 2014.09.01.)

제9조의5(합격자사정) ① 대학원장은 입학전형의 합격자 사정을 위하여 각 과정의 전형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합격최저기준을 통과한 자를 대상으로 각 학위과정의 합격사정 기준을 설정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 대학원장은 위원회의 합격자 사정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0.02.01)

제 3 장 등록 · 수강신청 · 전공변경 및 수업

제10조(등록절차) ① 수업료와 기타 등록금은 학기 단위로 부과한다.(개정 2005.12. 01)

② 등록은 매학기 시작 전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마침으로써 완료된다.

③ 수업연한 내에 수료학점을 취득하지 못하고 미취득 학점(수강신청 학점)이 3학점 이하일 경우에는 등록금의 2분의 1을, 4학점 이상일 경우에는 등록금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본 대학교 「대학등록금에 관한 내규」에 의한다. (개정 2006.12. 1, 2007.12. 1, 2010.02.01., 2015.03.01)

④ (삭제 2010.01.01)

⑤ (삭제 2010.01.01)

제10조의2(연구등록) ①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 또는 논문지도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당해 학기에 연구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금은 당해 학기 등록금의 20%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구등록은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수료 후 6회 이내,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10회 이내에 한하여 인정한다.(개정 2015.03.01.)

② 연구등록을 한 학생이 현저히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신설 2010.02.01., 개정 2015.03.01)

제11조(등록금반환) 등록을 완료하고 법령에 의하여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 등이 발생한 학생 및 연구등록생, 공개과정생, 연구과정생의 경우 등록금 반환에 대한 사항은 본 대학교 「대학등록금에 관한 내규」에 의한다. (개정 2007.12. 1, 개정 2010.01.01., 2015.03.01)

제12조(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매학기 소정의 기간에 개설된 교과목에 한해 학과(전공) 책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반드시 본인이 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학과(전공)의 상급 학기 또는 하급 학기, 타 학과(전공)에 개설된 교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은 가능하나, 이수한 교과목에 대한 재수강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락한 교과목에 대한 재수강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2.01.)

③ 학위과정별 매학기 최소 수강신청 학점 및 최대 수강신청은 다음과 같다.

다만, 마지막 학기에는 수강신청 학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가. 석사학위과정의 매학기 최소 수강신청 학점은 6학점으로 하며, 최대 8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박사학위과정의 1 ~ 2학기차는 수강신청 학점은 최소 6학점에서 최대 12학점까지이며, 3학기차부터는 최소 6학점에서 최대 9학점까지로 한다. 단, 논문연구 학점은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14.09.01.)

제12조의2(수강신청 사전신고 및 제척) ①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 해당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의 자녀인 경우에는 해당 교수는 그 사실을 대학원교학팀에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01.01.)

② 학생이 수강하고자 하는 강의가 부모가 담당하는 강의일 경우에는 해당 교수 및 지도교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강의를 수강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신설 2022.01.01.)

제13조(전공변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2학기차 학기 개시전 1회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원하는 전공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개정 2006.12.01., 2014.09.01., 2015.03.01.)

1. 대학원에서 제1기(첫 학기)를 이수한 학생(개정 2015.03.01.)
2. 등록기간 내에 학과(전공)책임교수를 확인을 받아 학과(전공)변경신청원[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한 학생 (개정 2014.09.01., 2015.03.01)
3. 전공변경은 동일계열, 동일대학원에 한한다. (신설 2016.09.01.)

제14조(수업) ① 교시별 수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교시		주중(월 ~ 금) 수업시간	토요일 수업시간	비고
주간	제 1교시	09:30 ~ 10:20	09:30 ~ 10:20	
	제 2교시	10:30 ~ 11:20	10:30 ~ 11:20	
	제 3교시	11:30 ~ 12:20	11:30 ~ 12:20	
	제 4교시	12:30 ~ 13:20	12:30 ~ 13:20	
	제 5교시	13:30 ~ 14:20	13:30 ~ 14:20	
	제 6교시	14:30 ~ 15:20	14:30 ~ 15:20	
	제 7교시	15:30 ~ 16:20	15:30 ~ 16:20	
	제 8교시	16:30 ~ 17:20	16:30 ~ 17:20	
	제 9교시	17:30 ~ 18:20	17:30 ~ 18:20	
야간	제 1교시	19:00 ~ 19:50		
	제 2교시	19:55 ~ 20:45		
	제 3교시	20:50 ~ 21:40		
	제 4교시	21:45 ~ 22:35		

② 수업장소는 매학기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대학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09.01.)

제15조(타대학원취득학점인정) ① 「대학원학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타 대학원에서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6학점 범위 내에서 등록기간 내에 타 대학원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03.01.)

②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대학원학칙」 제 2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6학점 범위 내에서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 1)

③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의 이전을 요하는 학생은 다음 학기의 수강신청 이전에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강의계획서) 각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별도의 지정기간 내에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01, 2007.12.01)

제17조(타전공과목이수) ① 대학원생이 재적하는 전공이 아닌 본 대학원내의 타 전공에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전공)책임교수 확인을 받아 타 학과(전공)교과목이수신청원[별지 제3호 서식]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2.01., 2014.09.01)

② 타 전공의 취득학점은 8학점 범위 내에서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4.09.01)

제18조(교과목담당교수변경) 교과목 담당교수가 장기출장 또는 기타 사유로 5주 이상 강의를 담당할 수 없을 경우 학과(전공) 책임교수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교과목 담당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12.01., 2010.02.01., 2014.09.01.)

제19조(학점인정) ① 학점인정은 매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출석하고 시험성적이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② 매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수업을 하고 군복무로 인해 휴학하는 학생의 수강과목에 대하여는 성적평가를 거쳐 학점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③ 복학생이 휴학 전에 취득한 학점은 이를 인정하며 복학학기 이후의 교과과정에 따라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④ 논문지도학점에 대한 평가는 P(합격), NP(불합격)로 한다. 단, 평점평균계산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01)

제20조 (삭제 2005.12.01)

제 4 장 교과목 · 학점 · 시험 및 성적

제21조(교육과정편성절차) ① 교육과정의 편성 및 개편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10.02.01)

1. 각 대학원의 학과(전공)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과정 편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신설 2010.02.01)
2. 각 대학원 학과(전공)에서 정하여 제출한 교육과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신설 2010.02.01)

② 이수과목의 선택은 해당 학과(전공)책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12. 1, 개정 2010.02.01)

제21조의2(교육과정편성방법) 교육과정 편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은 대학원의 교육목적 및 학과(전공)의 교육목표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2. 대학원의 교육과정은 학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과 연계성을 가져야 하며, 학문적 체계와 대학원 각 과정의 교육수준을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3. 각 과정의 교과목은 전공과목으로 편성하고, 2학점 또는 3학점 단위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09.01.)
4. 교과목의 성격상 선수 · 후수의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0.01.01)

제21조의3(교과목의개설및이수) ① 학과(전공) 책임교수는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학기에 개설할 교과목을 정하고, 이를 학기 시작 1월 전까지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학위과정별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대학원학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다. (신설 2010.02.01)

제21조의4(교과운영) ① 강사 위촉이 필요한 경우, 학과(전공) 책임교수는 학기 시작 1월 전까지 위촉할 강사의 이력서와 학력 및 경력증명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강사는 박사학위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② 학과(전공) 책임교수는 당해 학기 개설 교과목 담당 교수 · 강사의 강의계획서를 취합하여 학기 시작 14일 전까지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사 교과목의 학과(전공)별 중복개설은 지양한다. (신설 2010.02.01.)

④ 학위과정별 특성에 따라 당해 학기 개설 교과목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학기 중 또는 방학기간 중 집중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4.09.01.)

제22조(특수연구보고서) 대학원 학생에게는 학기 중 특수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의2(연구보고서) ① 특수대학원 무논문학위과정생의 학위수여요건으로 지정된 과제에 대한 보고서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작성한 연구보고서 1부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16.09.01.)

1. 보고서의 체제와 양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가. 판종은 4.6배판(18.8㎝× 25.7㎝)
   나. 지질은 70파운드 이상의 모조지
   다. 인쇄방식은 전산인쇄 또는 활판인쇄로 하되, 단면인쇄도 가능
   라. 표지는 소프트 카바

마. 표지 인쇄양식은 흑색

2.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가. 차례

나. 본문(서론, 본론, 결론)

다. 참고서적 목록

라. 부록 기타

② 지도교수는 연구보고서의 통과여부(성적부여)를 결정하여 심사결과표[별지 제37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며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23조(교과목의폐강) 교과목별 수강신청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대학원장은 해당학기의 설강을 폐지한다. (개정2005.12.01, 2006.12.01., 2010.02.01., 2014.09.01)

1. 박사학위과정의 교과목별 수강신청자가 2명 이하일 때 해당학기 설강을 폐지한다. 단, 연구논문 교과목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10.02.01., 개정 2016.09.01.)
2. 석사학위과정은 교과목별 수강신청자가 5명 이하일 때 해당학기 설강을 폐지한다. 단, 논문연구 교과목과 연구과제 교과목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10.02.01., 개정 2014.09.01., 개정 2016.09.01.)
3. 단,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할 수 있다. (신설 2016.09.01.)

제24조(학점의특별인정) 석사학위 과정의 경우, 국내외 타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원에 입학하였을 경우에는, 전적대학원의 성적이 B학점 이상인 과목으로서 소속 대학원의 설강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소속 대학원의 성적 사정을 거쳐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 1)

제25조 (삭제 2010.01.01)

제25조의2(성적평가표제출) 교과목 담당교수는 종강 후 시험, 과제물, 출석상황 등을 반영하여 성적을 평가하고, 성적평가표를 정해진 기간 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02.01.)

제25조의3(교수자녀의 성적평가) ① 강의를 수강한 학생이 해당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의 자녀인 경우에는 최종 성적부여 시 성적산출 근거를 책임교수 또는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책임교수 및 대학원장은 성적의 공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2.01.01.)

② 강의를 수강한 학생이 교수 본인의 자녀임에도 사전 미신고 또는 본조 제1항을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다. (신설 2022.01.01.)

제 5 장 학과 · 전공책임교수 및 학위논문 (개정 2010.01.01)

제26조(학과(전공)책임교수위촉) 각 학과(전공) 책임교수는 대학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5.12. 1, 개정 2010.02.01)

제27조(학과(전공)책임교수임기) ① 각 학과(전공) 책임교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4. 11. 1, 2005.12. 1, 개정 2010.02.01)

② 임기중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할 시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8조(학과(전공)책임교수임무) 학과(전공) 책임교수는 전반적인 학사를 관장하며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5.12. 1, 개정 2010.02.01)

1. 해당 학과(전공)의 교육과정에 관한 교과목 설정 및 개설을 위한 세부 사항 관장 (개정 2010.02.01)
2. 시간표 작성 및 강사 추천
3. 학과(전공)분야에 대한 학생의 연구지도와 논문지도교수 추천(개정 2010.02.01)
4. 지도교수가 논문 심사위원을 제청하면 위원 배정을 조정한 후 추천
5. 해당 학과(전공)에 대한 선수 내지 후수 교과목 지정 및 이수 대상자 선정(신설 2005.12.01., 개정 2010.02.01., 2014.09.01.)

제29조(논문지도교수자격) 논문지도교수는 해당 학생과 유사한 학과(전공) 분야의 박사학위를 반드시 소지하고 본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4.09.01.)

제29조의2(공동논문지도교수) 대학원장은 본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이나 외부기관(타 대학, 산업체, 연구소 등)에 소속된 자 중 제29조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된 자에 한해 공동논문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09.01.)

제30조(논문지도교수의선정·임무및논문연구계획서제출) ① 학과(전공) 책임교수는 2학기차 말까지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12.01, 개정 2008.11.01, 개정 2010.02.01. 2014.09.01)

② 학과(전공) 책임교수가 제1항에 의한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학생의 희망과 소속 학과(전공) 교수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5.12.01, 개정 2010.02.01., 2014.09.01.)

③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연구 교과목 개설을 통해 지도학생의 학점취득, 논문작성 지도, 논문심사위원 제청, 기타 논문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한다.(개정 2014.09.01.)

④ 논문지도교수의 장기출장, 질병, 휴직,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의 지도가 어려울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학과(전공) 책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02.01.,

2014.09.01.)

⑤ 1인의 논문지도교수가 지도할 수 있는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학생수는 동일 학기에 6인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학과(전공)과정 운영과 교과과정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초과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0.02.01., 2014.09.01., 2015.12.01.)

⑥ 석사학위과정 3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 2학기 이상의 등록을 마친 학생은 논문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정의 기일 내에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전공)책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02.01., 2015.03.01)

⑦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은 석사학위과정 1개 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 2개 학기 이상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은 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0.02.01. 개정 2014.09.01., 2015.03.01.)

⑧ 논문지도교수는 학생의 학위논문에 관한 연구윤리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부정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신설 2015.12.01.)

제30조의2(논문지도결과보고서)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지도 학기말에 논문지도결과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0.02.01., 개정 2014.09.01.)

제30조의3(학위청구논문의공개발표) 각 학과(전공)의 공개발표는 논문지도교수와 학과(전공) 책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소속 교수, 논문심사위원과 대학원생의 참석하에 공개발표를 하여야 하고, 학과(전공) 책임교수는 석사·박사학위청구논문의 공개발표 결과를 공개발표결과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한 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0.01.01., 개정 2014.09.01.)

제30조의4(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 ① 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논문학점을 포함하여 40학점 이상을 취득 예정인 학생(개정 2015.03.01.)
2. 총 이수학점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학생(개정 2015.03.01.)
3. 논문연구계획서를 승인 받고 2개 학기 이상 논문지도교수의 논문지도를 받은 학생(개정 2015.03.01.)
4.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학생(개정 2015.03.01.)
5. 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를 한 학생(개정 2014.09.01., 2015.03.01)
6. 4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개정 2015.03.01.)
7. 입학 이후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학과에서 정하는 소정의 연구 실적이 있는 학생 (신설 2016.09.01.)

②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26학점 이상을 취득 예정인 학생(개정 2015.03.01.)

2. 총 이수학점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학생(개정 2015.03.01.)
3. 논문연구계획서를 승인 받고 1개 학기 이상 논문지도교수의 논문지도를 받은 학생(개정 2015.03.01.)
4. 자격시험(종합시험)에 합격한 학생(개정 2015.03.01.)
5. 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를 한 학생(개정 2014.09.01., 2015.03.01)
6. 4학기 이상 등록을 한 학생(신설 2010.02.01. 개정 2015.03.01)

제30조의5(학위청구논문의작성과제출)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 시기는 매 학년도 5월과 11월로 한다.

② 학위청구논문 제출자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학위청구논문을 심사 받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03.01.)

1. 박사학위과정
   가. 박사학위청구논문심사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1부
   나. 박사학위논문 요약서[별지 제9호 서식] 5부
   다. 박사학위논문(심사용) 5부
   라. 논문지도 결과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마. 연구윤리준수확인서[별지 제31호 서식] 1부(신설 2015.12.01.)
2. 석사학위과정
   가. 석사학위청구논문심사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 1부
   나. 석사학위논문 요약서[별지 제11호 서식] 3부
   다. 석사학위논문(심사용) 3부
   라. 논문지도 결과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 1부(신설 2010.02.01.)
   마. 연구윤리준수확인서[별지 제31호 서식] 1부(신설 2015.12.01.)

제30조의6(논문심사위원구성및자격) ① 논문심사위원의 수는 석사학위청구논문의 경우 3인 이상, 박사학위청구논문의 경우 5인 이상으로 하되, 논문지도교수는 당연직 논문심사위원이 된다.

②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를 제외한 논문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논문심사위원장은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며, 의결에 있어서는 다른 논문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④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이 있는 본 대학교의 교원(비전임 교원 포함)
2. 제1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타 대학교의 전임교원
3. 제출된 학위청구논문의 주제에 관하여 학계에서 인정한 전문가

⑤ 논문지도교수가 논문심사위원 후보를 제청하면 학과(전공) 책임교수는 논문

심사위원 배정을 조정한 후, 추천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괄대학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12.01.)

⑥ 박사학위청구논문의 논문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은 제4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외부 논문심사위원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부 논문심사위원을 1인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0.02.01)

제30조의7(학위청구심사) 학위청구 심사는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0.02.01)

제30조의8(논문심사의내용및방법) ① 논문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의 체계, 연구방법 및 내용, 학문적기여도 등의 적절성을 심사한다.

② 논문심사위원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자에게 논문심사에 필요한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0.02.01)

제30조의9(논문심사의횟수와기간) ① 석사·박사학위청구논문의 심사는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석사학위청구논문은 논문심사 개시일로부터 1월 이내에, 박사학위청구논문은 심사 개시일로부터 2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신설 2010.02.01)

제30조의10(논문심사의판정) 논문심사의 평가는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석사 · 박사학위청구논문은 논문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하였을 때 합격으로 판정한다.(신설 2010.02.01)

제30조의11(구술시험) ① 구술시험은 논문심사와 병행하며, 논문에 관련된 문제로 시험한다.

② 합격판정방법은 제30조의10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0.02.01)

제30조의12(논문심사결과보고) ①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 완료 후 소정의 기일 내에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박사학위청구논문의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 석사학위청구논문의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최종 논문심사 결과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02.01., 개정 2014.09.01.)

②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 완료 후 신청자가 제출한 논문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와 논문 표절검사 서비스 검사결과 및 검토내용[별지 제34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1.)

제30조의13(논문 재심사) ① 논문심사에 불합격한 학생은 다음 학기에 학위청구 논문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5.03.01.)

② 논문심사에 합격하였으나 구술시험에 불합격한 학생은 다음 학기에 구술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 (신설 2010.02.01. 개정 2015.03.01.)

제30조의14(논문합격시한) 학위청구논문의 합격시한을 두지 아니한다.(신설

2010.02.01)

제30조의15(학위논문의제출) ① 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은 박사학위과정은 논문 5부(하드커버)를, 석사학위과정은 논문 5부(하드커버)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되는 논문에는 논문심사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논문인준서가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09.01., 2015.03.01., 2015.12.01.)

②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하는 학위논문의 체제는 대학원의 석사 · 박사학위논문 작성지침으로 정하며, 관련 법령 등에 의거 학위논문에 대한 온라인 제출 및 부가적인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02.01., 개정 2014.09.01.)

제30조의16(연구윤리) 학위논문과 관련된 연구윤리는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따르며 부정행위로 판명될 경우, 학칙 제25조의5에 따라 총장이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5.12.01.)

제30조의17(학위논문의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학생은 학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학술지 게재, 학회 발표, 단행본 출간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그러나 학위논문을 이미(학위를 받기 전에) 공표하였거나 총장이 공표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는 공표하지 않아도 된다. (신설 2015.12.01.)

제 5 장의 2 학위수여 및 수료(개정 2010.02.01)

제31조(학위수여의 의결) 대학원장은 학위청구심사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0.02.01)

제31조의2(학위수여) 학위는 대학원학칙 제25조에 의하여 학위종별 및 수여학위명에 따라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수여한다. (신설 2010.02.01)

제31조의3(학위기) 박사학위의 학위기는 [별지 제14호 서식], 석사학위의 학위기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이를 수여한다. (신설 2010.02.01.)

제31조의4(명예박사학위의 학위기) 명예박사학위의 학위기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이를 수여한다. (신설 2010.02.01., 개정 2014.09.01.)

제31조의5(학위복장)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복장은 "대학원 학위복장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0.02.01)

제31조의6(수료증서) 각 대학원 학위과정을 수료한 학생에게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신설 2010.02.01, 개정 2014.09.01. 2015.03.01)

제 6 장 휴학, 복학 및 자퇴, 제적, 재입학(개정 2014.09.01.)

제32조(휴학) ① 병역의무, 임신출산육아,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하

고자 할 때에는 학과(전공) 책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휴학신청원[별지 제18호 서식]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 임신출산육아,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군입영통지서, 출생증명서, 진단서,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03.01.)

②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학과(전공) 책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휴학연기신청원[별지 제18호 서식]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4.09.01.)

제32조 (삭제 2010.02.01)

제32조의2(복학) ① 휴학한 학생은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소정의 기간에 복학신청원[별지 제19호 서식]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휴학기간 만료전이라도 해당 학기 또는 교과목의 이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복학할 수 있다.(개정 2015.03.01.)

② 복학수속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수업일수 1/3선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단, 복학일 이전의 수업기간은 결석으로 처리한다.

③ 군입대 휴학자는 전역 후 복학학기에 맞추어 복학원을 제출하되, 귀향조치 등으로 인하여 군입대 휴학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복학을 하거나 일반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14.09.01.)

제32조3(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과(전공) 책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자퇴원[별지 제20호 서식]을 대학원장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09.01. 개정 2015.03.01)

제32조4(제적) 대학원학칙 제29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 처리한다.

(신설 2014.09.01. 개정 2015.03.01)

제32조의5(재입학) ① 자퇴 또는 제적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자퇴 또는 제적자 중 해당 학년도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전공) 책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재입학신청원[별지 제21호 서식]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여석을 초과할 경우 취득 성적과 학과(전공) 책임교수 면담 결과를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선발한다.

③ 폐지된 학과(전공)의 자퇴 또는 제적자는 재입학 당시 개설된 학과(전공)으로만 재입학이 가능하며, 재입학자가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재입학은 취소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과 관련된 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4.09.01.)

제 7 장 공개강좌, 연구과정생 및 외국인학생 (개정 2010.02.01)

제33조(공개강좌) ① 대학원학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되는 공개강좌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정한다.(개정2010.02.01)

② 공개강좌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고 수강생에 대해서는 소정의 수강료를 징수한다. (신설 2010.02.01)

③ 공개강좌를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0.02.01., 개정 2014.09.01.)

제34조(연구과정) ① 대학원학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대학원에 연구과정을 둘 수 있으며 연구과정생의 수업연한은 1년(2학기)이내로 하며 재학연한은 2년(4학기) 이내로 한다. (개정2010.02.01)

② 연구과정생은 학기당 6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으며, 연구과정생이 석사과정으로 입학할 경우 연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12학점 범위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③ 연구과정은 석사학위과정에 한하여 병설할 수 있다. (신설 2010.02.01)

④ 연구과정의 수료학점은 12학점으로 한다. (신설 2010.02.01)

⑤ 수료학점을 이수한 연구생에게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이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10.02.01., 개정 2014.09.01.)

제34조의2(입학자격및시기) 연구과정의 입학지원자격 및 전공분야, 입학시기는 석사학위과정에 준한다.(개정 2010.02.01)

제34조의3(입학지원 서류) 연구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 제1항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02.01)

제34조의4(입학전형) 연구과정의 입학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한다.(신설 2010.02.01)

제34조의5(연구과정생의신분) ① 연구과정생은 재학생과 동등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연구과정생에게는 학생증을 발급한다. (신설 2010.02.01)

제34조의6(연구과정생의제적) 연구과정생이 자격미달 또는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총장은 등록취소 또는 제적할 수 있다. (신설 2010.02.01)

제35조 (삭제 2010.02.01)

제36조(연구과정보고서의작성) 연구과정의 수료요건으로 지정된 과제에 대한 보고서는 다음 각항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보고서의 체제와 양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가. 판종은 4.6배판(18.8㎝× 25.7㎝)
   나. 지질은 70파운드 이상의 모조지
   다. 인쇄방식은 전산인쇄 또는 활판인쇄로 하되, 단면인쇄도 가능
   라. 표지는 소프트 카바
   마. 표지 인쇄양식은 흑색
2.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가. 차례
   나. 본문(서론, 본론, 결론)
   다. 참고서적 목록
   라. 부록 기타

제36조의2(외국인및재외국민학생) ① 대학원학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전형에 의한 정원외 입학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학생,
2.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 · 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②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입학전형과 학사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외국인유학생의 특별입학에 관한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개정 2010.02.01)

제37조(시행지침) 이 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02.01)

제38조 (삭제 2010.02.01)

제39조 (삭제 2010.02.01)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 2조(폐지규정) 이 시행세칙의 시행과 동시에 각 대학원의 2004년 2월 28일 이전의 시행세칙 등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 2조(경과조치) 제10조 제1항, 제3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 시행 당시 기존 재적생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학칙시행세칙 제10조 제1항, 제3항을 적용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10년 02월 01일부터 적용한다.

제 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시행세칙의 시행과 동시에 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12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제29조 및 제29조의2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 세칙 시행 당시 기존 논문지도교수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시행세칙 제29조 및 제29조의1을 적

용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시행에도 불구하고 제22조의2, 제30조의4 제1항 제7호는 2017년 3월 1일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편입생 학점인정 신청원

결재	담당	팀장	대학원장	총장
			전결	

☐ 신청자

학과명/대학원명	전공명	학기차	학번	성명

☐ 학점인정 총괄표

신청학점						인정학점			
전적 대학원	전적 전공	기초	전공선택	전공필수	계	기초	전공선택	전공필수	계

☐ 학점인정 내역

전적 대학원 이수			전공 교육과정 이수 인정			
교과목명	학점	성적	이수구분	교과목코드	교과목명	인정학점
계			계			

※ 대학원학칙 제24조 제2항에 의거 2학기 편입자는 6학점, 3학기 편입자는 12학점까지 인정 가능

위와 같이 전적 대학원 학점 인정 내역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책임교수 (인)

영산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학과(전공) 변경 신청원

결재	담당	팀장	대학원장	총장
			전결	

☐ 신청자

과 정	박사( ), 석사( )	학과/대학원명			
전 공 명		학 번		학기차	

☐ 학과(전공) 변경 내역

현행(~ 을)	
변경(~ 으로)	

상기와 같이 학과(전공)변경신청원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책임교수① : (인)

위 신청인은 본 학과(전공)으로 변경함에 있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책임교수② : (인)

영산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 책임교수① 변경 前 학과(전공) 책임교수가 서명 또는 날인

※ 책임교수② 변경 後 학과(전공) 책임교수가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 서식]

타 학과(전공) 교과목 이수 신청서

결재	담당	팀장	대학원장	총장
			전결	

신청자	대학원명	전공(학과)명	학기차	학번	성명

신청교과목	개설 대학원명	개설 전공(학과)명	교과목코드	교과목명	학점	비고
	계					

※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17조에 의거 타 전공의 취득 학점은 8학점 이내에서 인정됨을 유념

상기와 같이 타 전공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위 신청에 의해 이수예정 교과목의 교육내용을 확인한바 본 전공(학과)의 전공과목 이수인정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책임교수 : (인)

영산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결재	담당	팀장	대학원장	총장
			전결	

논문 지도교수 선정(변경)원

구 분 ※ 해당란에 체크	신규 (　　), 신규-공동 (　　) 변경 (　　), 변경-공동 (　　)					
신청자	과 정	석사 (　　) 박사 (　　)	대학원명 (학과명)		전공명	
	학기차	2학기차 (　　) 3학기차 (　　)	학 번		성 명	
논문지도 교수사항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명	※ 공동 지도일 경우에만 작성	소 속	※ 공동 지도일 경우에만 작성	직 급	※ 공동 지도일 경우에만 작성
논문지도 교수 변경사유	※ 논문 지도교수 변경일 경우에만 작성함 유념					

위와 같이 학위(청구)논문 지도교수 선정(변경)원을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지도교수① (인)

지도교수② (인)

책임교수 (인)

영산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 지도교수① 최초 지도교수 이거나, 변경 前 지도교수가 서명 또는 날인
※ 책임교수② 변경 後 지도교수가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5호 서식]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과 정		석사( ) 박사( )	대학원명 (학과명)		전 공 명	
학 기 차			학 번		성 명	
논문 제목	국문					
	영문					
연구목적						
논문개요						
연구범위 및 방법						
참고문헌						

위와 같이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지 도 교 수 : (인)

전공책임교수 : (인)

영산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 지면 부족 시 별지 제출이 가능

[별지 제6호 서식]

논문지도 결과보고서

논문지도대상자							
대학원명 (학과명)		전공명		학번		성명	
과정	박사(　　), 석사(　　)		지도학기		20_____-____학기 20_____-____학기		
논제							

지도내용

상기 인의 학위(청구)논문 지도교수로서 지도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지도교수 :　　(인)

영산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 지면 부족 시 별지 제출이 가능

[별지 제7호 서식]

공개발표 결과보고서

<table>
<tr><td rowspan="3">발 표 자</td><td>과 정</td><td>석사(　　)
박사(　　)</td><td>대학원명
(학과명)</td><td colspan="2"></td><td>전공명</td><td></td></tr>
<tr><td>학 번</td><td colspan="2"></td><td rowspan="2">학적
상태</td><td>재학생</td><td colspan="2">(　　) 학기차</td></tr>
<tr><td>성 명</td><td colspan="2"></td><td>수료자</td><td colspan="2">연구등록 (　　) 학기차</td></tr>
<tr><td>발표일시</td><td colspan="3">년　　월　　일</td><td colspan="2">발표장소</td><td colspan="2"></td></tr>
<tr><td>발표주제</td><td colspan="7"></td></tr>
<tr><td>공개발표
요　　지</td><td colspan="7"></td></tr>
</table>

첨부 : 공개발표 논문 1부

위와 같이 공개발표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지 도 교 수 :　　(인)

전공책임교수 :　　(인)

영산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박사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서

학 과 명				학 기 차	
학 번		성 명		취득학점	
논문 제목	국문				
	영문				
종합시험	합 격 ( ) 불합격 ( )		외국어시험	합 격 ( ) 불합격 ( )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거 소정의 논문 심사비와 첨부의 서류를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박사학위 심사용 논문 5부
2. 박사학위 심사용 논문 요약서 5부
3. 논문지도결과 보고서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상기 인의 지도교수로서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을 추천합니다.

지 도 교 수 : (인)

전공책임교수 : (인)

영산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박사학위 심사용 논문 요약서

<table>
<tr><td colspan="2">학과명</td><td></td><td>학 번</td><td></td><td>성 명</td><td></td></tr>
<tr><td rowspan="2">논 문
제 목</td><td>국문</td><td colspan="5"></td></tr>
<tr><td>영문</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7"><u>논문요지</u></td></tr>
</table>

[별지 제10호 서식]

석사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서

대학원명		전 공 명		학 기 차	
학 번		성 명		취득학점	
논문 제목	국문				
	영문				
종합시험	합격 ( ) 불합격 ( )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30조의 5의 규정에 의거 소정의 논문심사비와 첨부의 서류를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석사학위 심사용 논문 3부
2. 석사학위 심사용 논문 요약서 3부
3. 논문지도결과보고서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상기 인의 지도교수로서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을 추천합니다.

지 도 교 수 : (인)

전공책임교수 : (인)

영산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석사학위 심사용 논문 요약서

<table>
<tr><td colspan="2">전공명</td><td></td><td>학 번</td><td></td><td>성 명</td><td></td></tr>
<tr><td rowspan="2">논 문
제 목</td><td>국문</td><td colspan="5"></td></tr>
<tr><td>영문</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7">논문요지</td></tr>
</table>

[별지 제12호 서식]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보고서

논문제출자 :

학 과 명 :

학 번 :

지 도 교 수 :

영산대학교 대학원

- 3의1 -

학 과 명		학 번		성 명	
논문제목	국문				
	영문				

1. 본심사

회 수	1 차	2 차
일 시	년 월 일 시	년 월 일 시
장 소		
평 가	통과기준 : 80점 이상	통과기준 : 80점 이상
	(점)	(점)

2. 구술시험

일 시	년 월 일 시
장 소	
평 가	통과기준 : 80점 이상
	(점)

3. 최종심사

일 시	년 월 일 시
장 소	
평 가	통과기준 : 80점 이상
	(점)

위 사람의 박사학위청구논문을 심사하고 이를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지도교수)

영산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 구술시험 요지

※ 박사논문 심사요지

위와 같이 구술시험 및 논문심사 요지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장 : (인)

영산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보고서

논문제출자 :

대 학 원 명 :

전 공 명 :

학 번 :

지 도 교 수 :

영산대학교 대학원

- 3의1 -

대학원명		전공명		학 번		성 명	
논문제목	국문						
	영문						

1. 본심사

회 수	1 차	2 차
일 시	년 월 일 시	년 월 일 시
장 소		
평 가	통과기준 : 80점 이상	통과기준 : 80점 이상
	(점)	(점)

2. 구술시험

일 시	년 월 일 시
장 소	
평 가	통과기준 : 80점 이상
	(점)

3. 최종심사

일 시	년 월 일 시
장 소	
평 가	통과기준 : 80점 이상
	(점)

위 사람의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심사하고 이를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지도교수)

영산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 3의2 -

※ 구술시험 요지

※ 석사논문 심사요지

위와 같이 구술시험 및 논문심사 요지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장 : (인)

영산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제　　호

학　　위　　기

성　　명 :

생년월일 :

학위번호 :

위 사람은 본 대학원에서 ○○○학과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학박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논문제목 :
(영문논문명)

영산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 (직인 또는 서명)

위 인정에 의하여 ○○○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영산대학교 총장 (학위) ○○○ (직인 또는 서명)

[별지 제15호 서식]

제　　호

학　　위　　기

성　　명 :

생년월일 :

학위번호 :

위 사람은 본 대학원에서 ○○○전공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학석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논문제목 :
(영문논문명)

영산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 (직인 또는 서명)

위 인정에 의하여 ○○○학석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영산대학교 총장 (학위) ○○○ (직인 또는 서명)

[별지 제16호 서식]

제　　호

학　　위　　기

성　　명 :
생년월일 :
국　　적 :
학위번호 :

위 사람은 (　　)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대학교　대학원은 그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 ○○○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고자 추천합니다.

영산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 (직인 또는 서명)

위 추천에 의하여 명예 ○○○학 박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영산대학교 총장 (학위) ○○○ (직인 또는 서명)

[별지 제17호 서식]

제　　호

수 료 증 서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영산대학교 ○○대학원 ○○과정 ○○학과(전공)에서 소정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인정함.

20　년　월　일

영산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 (직인 또는 서명)

위의 인정에 의하여 본 수료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영산대학교 총장 (학위) ○○○ (직인 또는 서명)

[별지 제18호 서식]

휴학(연기)신청원

결재	담당	팀장	대학원장	총장
			전결	

※ 휴학(연기)신청원 제출 이전 중앙도서관/연봉도서관 대여 도서는 반납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반납 시 휴학 처리 불가)

☐ 학적사항

과 정	박사( ), 석사( )	학과/대학원명			
전 공 명		학 번		학기차 (휴학시점)	

☐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성별	년 월 일 / 남 ☐, 여 ☐
주 소			
연 락 처	(집전화) (휴대폰) (e-mail)		

☐ 휴학사항

휴학구분	휴학 ☐ 휴학연기 ☐
휴학(연기)사유	군입대 ☐ 가사사정 ☐ 질병 ☐ 기타 ☐ (사유 :) ※ 군입대 휴학(연기) 시는 입영통지서 사본 1부 제출, 질병 휴학(연기) 시는 종합병원 진단서 1부 제출
휴학(연기)기간	1개 학기(6개월) ☐ 2개 학기(1년) ☐

상기와 같이 휴학(연기)신청원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책임교수 : (인)

영산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 외국인유학생은 학적 변동에 따른 안내문을 반드시 수령하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9호 서식]

복학신청원

결재	담당	팀장	대학원장	총장
			전결	

☐ 학적사항

과 정	박사( ), 석사( )	학과/대학원명			
전 공 명		학 번		학기차 (복학시점)	

☐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성별	년 월 일 / 남 ☐, 여 ☐
주 소			
연 락 처	(집전화) (휴대폰) (e-mail)		

☐ 복학사항

휴학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복학학기	20 학년도 1학기 ☐, 2학기 ☐

상기와 같이 복학신청원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산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별지 제20호 서식]

자퇴원

결재	담당	팀장	대학원장	총장
			전결	

※ 자퇴원 제출 이전 중앙도서관/연봉도서관 대여 도서는 반납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반납 시 자퇴 처리 불가)

☐ 학적사항

과 정	박사( ), 석사( )	학과/대학원명			
전 공 명		학 번		학기차	

☐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성별	년 월 일 / 남 ☐, 여 ☐
주 소			
연 락 처	(집전화) (휴대폰) (e-mail)		

☐ 자퇴사항

자퇴사유	경제 사정 ☐ 직장 문제 ☐ 건강 문제 ☐ 학업 문제 ☐ 전공 적성 문제 ☐ 타 대학원 편입/진학 ☐ 출산/육아 ☐ 출국/이민 ☐ 기타 ☐ (사유 :)

상기와 같이 자퇴원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 책임교수 의견(필요 시 자퇴 사유 및 면담을 통해 기술)

20 년 월 일

책임교수 : (인)

영산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결재	담당	팀장	대학원장	총장
			전결	

재입학신청원

☐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성별	년 월 일 / 남( ),여( )
주 소			
연 락 처	(집)	(휴대폰)	

☐ 제적 당시 학적사항

과 정	박사( ), 석사( )	학과/대학원명			
전 공 명		학 번		학기차	
자퇴/제적일	년 월 일	자퇴/제적사유	미등록( ), 미복학( ), 자퇴( )		

☐ 재입학 시 학적사항

과 정	박사( ), 석사( )	재입학신청학기	2014학년도 2학기		
학과/대학원명		전 공 명		학기차	

상기와 같이 재입학신청원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위 신청인은 본 전공(학과)의 재입학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위 신청인에 대한 본 전공(학과) 재입학 의견을 제출합니다.]

※ 책임교수 의견(선택 기재사항으로 신청인의 열람을 원치 않을 경우 책임교수가 직접 밀봉하여 제출)

20 년 월 일

책임교수 : (인)

영산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제　　호

수 료 증

성　　명 : ○　○　○

생년월일 :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영산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영산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　(직인 또는 서명)

위의 증명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영산대학교 총장　(학위)　○○○　(직인 또는 서명)

[별지 제23호 서식]

제　　호

이 수 증

성　　명 :

생년월일 :

연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영산대학교　대학원 00 과정 00(학과 · 전공)
연구생으로서 소정의 연구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영산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 (직인 또는 서명)

[별지 제24호 서식]

보 강 계 획 서

결재	담 당	책임교수	대학원장	총장
			전결	

보강사유 :						
구분	일자	요일/교시	교과목명 (수강코드)	강의실	학년	주야
휴강 내역						
보강 계획						

위와 같이 보강하고자 합니다.

201 년 월 일

대학원/학과(전공) :

직 위 :

교수명 : (인)

영산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별지 제25호 서식]

결재	담당	팀장	대학원장	총장
			전결	

성적정정원

소속 : _____ 학번: _____ 학기차: _____ 성명: _____

과목명 : _____

기제출 성적 : _____ /100점 (등급 : _____)

정정 성적 : _____ /100점 (등급 : _____)

※ 정정사유(구체적으로) :

위와 같이 정정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대학원(학과/전공) :

직위 :

교수명 : (인)

영산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별지 제26호 서식]

박사학위논문 공표계획서

박사학위자 인적사항	학과명	
	학 번	
	성 명	
	연락처	
학위논문 제목		
공표방법		
공표예정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인)

영산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 박사학위논문 공표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 영산대학교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30조의17에 의거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학위 수여일부터 1년 이내에 학위논문을 학술지게재, 학회발표, 단행본 발간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합니다.
- 박사학위논문 제출자는 공표계획서를 제출하고, 공표 후에는 공표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대학원행정실 (051-540-7318~732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7호 서식]

학위청구논문 제목 변경원

결재	담당	팀장	대학원장	총장
			전결	

☐ 신청자

과 정	박사( ), 석사( )	학과/대학원명			
전 공 명		학 번		학기차	

☐ 변경 내역

현행(~ 을)	(국문)	
	(영문)	
변경(~ 으로)	(국문)	
	(영문)	

위와 같이 논문제목을 변경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논문지도교수 (인)

책임교수 (인)

영산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별지 제28호 서식]

학적 기재사항 정정원

결재	담당	팀장	대학원장	총장
			전결	

☐ 신청자

과 정	박사( ), 석사( )	학과/대학원명			
전 공 명		학 번		학기차	

☐ 변경내역

○ 본적 변경 전 _____ 변경 후 _____
○ 성명 변경 전 _____ 변경 후 _____
○ 주민등록번호 변경 전 _____ 변경 후 _____
○ 기타 변경 전 _____ 변경 후 _____

위와 같이 정정하고자 합니다.

첨부 주민등록초본 1부

20 . . .

신 청 인 (인)

영산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별지 제29호 서식]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과 정	석사 ( ) 박사( )		대학원명 (학과명)		
전공명		학번		성명	
논문 제목	국문				
	영문				

구 분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최종학위	전공명	비 고
	대 학 명	학 과 명					
심사위원장							
심사위원 (논문지도교수)	*영산대*	*00학과*	*부교수*	*홍길동*	*박사*	*경영학*	
심사위원	*서울대*	***학과*	*교수*	*장길산*	*박사*	*경영학*	*외부*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참조사항	

※ 첨부 : 외부 심사위원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20 년 월 일

지 도 교 수 : (인)

전공책임교수 : (인)

영산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 논문 지도 및 심사 자격 : 논문 제출자와 유사한 학과(전공)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대학원장이 인정한 자
※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당연직으로 하고 3인 이상 구성(내부 구성)하며,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당연직으로 하고 5인 이상 구성하되,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은 반드시 자격이 있는 타 대학교 전임교원이나, 학계에서 인정하는 외부 전문가 2인 이상으로 구성(단, 박사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외부 논문심사위원을 1인으로 할 수 있음. 이 경우 상위 참조사항 란에 그 사유를 기술)
※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가 될 수 없음을 유념(논문 심사위원장은 논문 지도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 중 호선)
※ 외부 심사위원(타 대학 교원 등)은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함

[별지 제30호 서식]

결재	담당	팀장	대학원장	총장
			전결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변경원

과 정		석사 (　　) 박사 (　)		대학원명 (학과명)		
전공명			학번		성명	
논문 제목	국문					
	영문					

○ 변경 전

구분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최종학위	전공명	비고
	대학명	학과명					
심사위원장							
심사위원							
심사위원							

○ 변경 후

구분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최종학위	전공명	비고
	대학 명	학과 명					
심사위원장							
심사위원							
심사위원							

변경사유	

※ 첨부 :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201 년　　월　　일

지 도 교 수 :　　(인)

전공책임교수 :　　(인)

영산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별지 제31호 서식]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논문제출자	학위과정		학과/전공		학번		성명	
논문지도교수								
논문제목	국문							
	영문							
연락처	주소				자택(☎)		휴대폰	

본인은 영산대학교 대학원생으로서 학위논문(작품)을 작성함에 있어 연구진실성을 바탕으로 연구윤리를 충실히 준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서약하며, 제반 연구윤리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대학원학칙 제25조의5(학위수여의 취소)에 의거 학교의 어떠한 제재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학교에서 정하는 절차와 결정에 따를 것임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 본인은 논문(작품)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정직하고 엄정한 연구를 수행하여 학위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 본인은 학위논문(작품) 작성 시 대필, 위조, 변조, 표절 등 학문적 진실성을 훼손하는 어떤 연구 부정행위도 없었습니다.

년 월 일

위 본인(서약자) : (자필서명)

영산대학교 총괄대학원장 귀하

※ 석・박사학위(청구)논문(작품) 최종심사일 1주일전까지 대학원 행정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학위(청구)논문(작품) 제출자는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사본 1부를 지참하여 최종심사전에 지도교수에게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2호 서식]

박사학위논문 공표확인서

박사학위자 인적사항	학과명	
	학 번	
	학위번호	
	최득학위명	
	성 명	
	연락처	
학위논문 제목		
공표방법		
공표일자	년 월 일	

위와 같이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인)

영산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 박사학위논문 공표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 영산대학교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30조의17에 의거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학위 수여일부터 1년 이내에 학위논문을 학술지게재, 학회발표, 단행본 발간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합니다.
- 박사학위논문 제출자는 공표계획서를 제출하고, 공표 후에는 공표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대학원행정실 (051-540-7318~732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3호 서식]

"참된인성 · 창의성 · 실용성"

재 입 학 원

결재	담 당	팀 장	대학원장	총장
			전결	

대학원 / 학과 및 전공 : _____ 학번 : _____ 학기차 : _____

성명 : _____ 주민등록번호 : _____ - _____

전화 : 자택 (　　) _____ 근무처 (　　) _____ 핸드폰 (　　) _____

주소 : _____

제적일자	20　년　　월　　일
제적사유	□ 자퇴　　□ 학사제적 □ 미등록제적　　□ 미복학제적

위와 같이 제적되었으나 재입학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원생) :　　(인)

상기 학생의 재입학을 추천합니다.

책임교수 :　　(인)

영산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34호 서식]

논문 표절검사 서비스 검사결과 및 검토내용

<table>
<tr><td>구 분</td><td colspan="2">□ 학위논문 □ 학내 과제물</td></tr>
<tr><td>논문/과제명</td><td colspan="2"></td></tr>
<tr><td>작 성 자</td><td colspan="2">전공 : 학번 : 성명: (서명)</td></tr>
<tr><td rowspan="3">검사결과</td><td>검사등급
(표절률)</td><td>00 %(00 수준)</td></tr>
<tr><td>유의 수준인 경우
검토내용
(본인기술)</td><td></td></tr>
<tr><td>의심 수준인 경우
검토내용
(논문지도교수)</td><td></td></tr>
<tr><td rowspan="2">검토 확인결과
(논문지도교수
작성)</td><td colspan="2">확인자 (서명)</td></tr>
<tr><td colspan="2">검토 확인내용 :</td></tr>
<tr><td>첨부물</td><td colspan="2">논문 표절검사(카피킬러) 결과확인서(발급형태 : 기본보기) 1부 첨부</td></tr>
</table>

※ 작성요령 : 1. 구분 : 해당 종류에 √ 표시 기입. 2. 검사결과 기술 : 필요시 별지 사용

영산대학교 총괄대학원장 귀하

[별지 제35호 서식]

학위취득 선택 확인원
(논문 또는 학점대치)

결재	담당	팀장	대학원장	총장
			전결	

☐ 학적사항

과 정	석사과정	특수대학원명			
전 공 명		학 번		학기차 (복학시점)	

☐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성별	년 월 일 / 남 ☐, 여 ☐
주 소			
연 락 처	(집전화) (휴대폰) (e-mail)		

☐ 선택사항

이수 여부	- 학위청구논문 제출(논문학위과정생) 학위 취득 ☐ - 학위청구논문 미제출 학점취득 졸업(무논문학위과정생) ☐

※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합격)하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원생(논문학위과정생)은 26학점(논문연구 2학점 포함) 이상 이수해야만 하며, 4학기차에 논문연구(2학점)을 반드시 이수하고 종합시험을 합격하여야만 한다. 또한 全학기 평점평균이 3.0 이상이여야 한다.

※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학점 취득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원생(무논문학위과정생)은 30학점(연구과제 2학점 포함)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최종학기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고 全학기 평점평균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

상기와 같이 선택 확인원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책임교수 : (인)

영산대학교 총괄대학원장 귀하

[별지 제36호 서식]

학위취득 선택 확인 변경원
(논문 또는 학점대치)

결재	담당	팀장	대학원장	총장
			전결	

☐ 학적사항

과 정	석사과정	특수대학원명			
전 공 명		학 번		학기차 (복학시점)	

☐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성별	년 월 일 / 남 ☐, 여 ☐
주 소			
연 락 처	(집전화) (휴대폰) (e-mail)		

☐ 변경사항

기존 선택	학위청구논문 합격 졸업 ☐ / 학점취득 졸업 ☐	선택일	
변경 선택	자필로 기재		
변경 사유	자필로 기재		

상기와 같이 선택 확인원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책임교수 : (인)

영산대학교 총괄대학원장 귀하

[별지 제37호 서식]

연구보고서 심사결과표

<table>
<tr><td>대학원 / 전공</td><td colspan="3">대학원 전공</td><td rowspan="2">성 명</td><td rowspan="2"></td></tr>
<tr><td>학 번</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연구보고서
제목</td><td colspan="5">(국문)</td></tr>
<tr><td colspan="5">(영문)</td></tr>
<tr><td rowspan="5">심사점수</td><td>평가항목</td><td colspan="2">심사성적
(항목당 25점 만점)</td><td colspan="2">합 계</td></tr>
<tr><td>연구방법</td><td colspan="2">점</td><td colspan="2" rowspan="4">점</td></tr>
<tr><td>내용의 수준</td><td colspan="2">점</td></tr>
<tr><td>체제</td><td colspan="2">점</td></tr>
<tr><td>학문적 기여도</td><td colspan="2">점</td></tr>
<tr><td>합격여부</td><td colspan="5">合 / 不</td></tr>
</table>

위와 같이 석사학위(무논문학위과정) 연구보고서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1 년 월 일

심사위원(지도교수) : (인)

영산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 심사성적의 합계가 70점(학점 C) 이상이어야 합격으로 판정함.